

2019년도 제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자 : 2019. 4. 10.(수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대 상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호갑,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II. 회의안건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회의안건: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2건(안건번호 제2019-10998~11047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그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제2019-10998호 ~ 11047호의 온라인 심의안건 50건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득하지 않고 웹하드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작권법 제133조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심의 안건 모두에 대하여 게시물 삭제 및 전송중단과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B 위원 : netflix 영화인 ‘폴라(2019)’ ‘클로즈(2018)’ ‘익스팅션(2018)’ ‘클로버필드 패러독스 (2018)’ 등 52건의 게시물(안건번호 제 2019-10998~11047호)은 단순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시정권고가 타당함
- C 위원 : 금번 심의안건들은 ‘폴라(2019)’, ‘클로즈(2018)’, ‘익스팅션(2018)’, ‘클로버필드 패러독스 (2018)’ 등과 같은 최근에 방영된 netflix 영화 등에 해당되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고, 단순 불법복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2019년 제3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4. 1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